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객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폐지〉

■ 최기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25호)

2026.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검토의견	2
1. 고객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폐지 (안 제29조제1항제2호 삭제)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기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2. 25.

다. 회 부 일 : 2026. 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하여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제10조제1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제29조제1항제2호).

이와 관련하여,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제재로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행법상 제10조제1항 위반 시 형사처벌 외에도 등록·인가의 취소, 업무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제12조제1항, 제12조의2).

이에 고객의 거래 등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하여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Ⅲ. 검토의견

1. 고객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폐지(안 제29조제1항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 업무상의 의무(제10조) -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그 고객과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항) ○ 벌칙(§29)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단서 생략) (제1항) :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자(제2호)	○ 업무상의 의무(제10조) - (현행과 같음) (제1항) ○ 임원임기(§12) - (현행과 같음) (제1항) : (삭제) (제2호)

개정안은 과도한 경제형벌을 경감하려는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2025.9.30.)」에 따라, 고객의 거래 등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하여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해 민간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제약받지 않도록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해소하고, 국민의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① 배임죄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② 형벌 대신 징벌적 과징금 또는 손해배상 등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며, ③ 생활밀착형인 국민의 경미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0조제1항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에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동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를 위반한 경우 ①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¹⁾,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²⁾ 및 ③ 과징금 부과³⁾가 가능하며, 고객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시행령에 따라 업무정지의 경우 2개월,⁴⁾ 과징금의 경우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40%⁵⁾가 부과되고 있음.

1) 「외국환거래법」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7.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외국환거래법」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2조의2(과징금)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2] 등록·인가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2. 개별 기준

차.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7호): 업무정지 2개월

5)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3] 과징금의 부과 기준

1. 재정경제부장관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에 다음 각 목의 부과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환거래법」 제10조제1항 위반 사례는 총 6건으로, 모두 업무정지가 이루어지거나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형벌이 부과된 사례는 없음.

한편,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⁶⁾, 이를 위반한 경우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⁷⁾

이처럼 고객확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근 형벌이 부과된 사례가 없고, 타 법에서도 행정제재로 부과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도한 형

나. 업무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 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각 목의 사항

나.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3.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또는 제2호 각 목의 사항

나.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라.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직권 말소에 관한 사항

마.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1) 예치금(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인 자로부터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재산을 말한다)과 구분하여 관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의 획득

② ~ ⑤ (생략)

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벌 대신 이미 존재하는 행정제재 수단을 활용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최근 5년간(2020~2024)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12조 4,349억원)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의 비중이 91.5%에 달하는 등 가상자산을 통해 정부의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급증하고 있어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관련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⁸⁾

이러한 입법 흐름 속에서 규제의 이행력을 담보할 벌칙을 먼저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만약 「외국환거래법」에서 가상자산의 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게 되는 경우, 형벌이 실제 적용되지 않더라도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과 함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40% 수준의 과징금이 실제로 충분한 억지력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임.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은행 등의 확인의무 위반은 행정제재로도 법익 보호가 가능하며, 절차적 사항이므로 형벌 필요성이 낮은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의 내용에 찬성하는 입장임.

8) 이와 관련하여,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최은석의원안(의안번호 2206816)과, 가상자산거래업자 등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 규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기상의원안(의안번호 2213766)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제29조(벌칙) ①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하지 <u>아니한 자</u>	<u><삭제></u>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48